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공동교섭단

# 2025 단체교섭 요구안

### 전문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및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경북교육청지부장(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조합원의 권익과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 단체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이 협약을 준수·이행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당사자】** 교섭의 당사자는 경상북도교육감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및 경상북도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경북교육청지부장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교육감과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기구령) 제2조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기관 등을 말한다.

② “각급 기관”은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행정기구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

**제4조【협약의 우선 적용】** ① 교육감은 본 협약이 정한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 기준 등을 규정한 법령·예산·조례 등이 각각 서로 다를 경우에는 법령·예산·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공무원에게 유리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 ② 교육감은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사유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근무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를 저하시킬 수 없다.
- ③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협약사항에 해석상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 제5조 【단체협약 성실이행】**
-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과 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남기고 이를 성실히 준수·이행할 의무를 갖는다.
  - ②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 즉시 각급 기관(학교)에 공문 시행하고, 각급 기관(학교)장은 공문 시행 2개월 이내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점검 시 지방공무원 대상으로 온라인 등의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 ④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단체협약 이행점검 및 각종 이행점검 시) 및 지속적으로 불이행한 기관(학교)에 대하여 당해 기관(학교)을 행정지도한다.
  - ⑤ 교육감은 교장자격 연수 시 단체협약에 대한 연수를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 ⑥ 본 협약 내용에 미달한 조례, 규칙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개정 하도록 노력한다.
  - ⑦ 교육감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권리를 존중한다.
  - ⑧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문을 통해 소속 교육감의 단체협약 이행여부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소속 교육감의 단체협약 이행 결과 문서를 노동조합에 반기별로 제공한다.
  - ⑨ 교육감은 본 협약의 예산관련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산안의 변경 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⑩ 노동조합과 교육감은 각각 노사 동수로 단체협약 이행 공동점검단을 구성한다. 운영 방법은 별도로 협의한다.

- 제6조 【타 단체와의 관계】**
-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을 타 단체와 동등하게 대우한다.
  - ② 교육감은 타 단체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교섭, 업무협의회 등을 할 경우 노동조합에 사전 통보하고 타당한 반대의견이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한다.

1. 각급 학교 행정실 소관업무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조합원의 업무 관련사항
2. 조합원의 인권보장, 근무조건, 후생복지 관련사항

**제7조 【근무조건 관련 사전협의】**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과 관련된 정책·조례·규칙·훈령·행정지침 등 제·개정 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고,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때 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도 반영하여 제출한다.

**제8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학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와 아래 각 호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1. 노동조합의 권위와 신용을 부당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2.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4. 각 노동조합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
  5. 그 밖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의 임원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② 노동조합은 제1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교육감은 즉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 ③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조사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활동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만약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한다.
-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각급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9조 【노동조합 전임자】** 교육감은 노동조합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그 밖의 인사상 신분에 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제2장 노동조합 활동

**제10조 【노동조합 활동 보장】**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3. 상급단체 및 연대조직의 회의 및 행사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대표자 면담(배석, 참관, 사진촬영 등 포함)
5. 노동조합 주관 조합원 교육 및 문화·체육 행사
6. 노동조합 주관 수련회
7. 노동조합 선거 시 입후보자 선거활동 및 선거관리위원회 활동
8.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활동
9. 교육지원청과의 협의회 참석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공식적인 요청에 따른 행사 및 회의에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참석
11. 기타 교육감과 합의한 행사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 지부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지부의 행사개최 등 협조 요청 시 사업타당성 검토 후 각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한다.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 지부 또는 지회에서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한다.

⑤ 교육감은 노동조합 및 지부의 임원을 전보하고자 할 때에는 전보희망서 등을 참고하여 전보한다.

⑥ 교육감은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합의서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통보한다.

⑦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보장한다.

- ⑧ 교육감은 각급 기관 업무분장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 ⑨ 교육감은 공무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위한 기준 적용 시 최대 인원을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단체 또는 연합, 연맹단체 등의 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제11조 【홍보활동의 보장】** ① 교육감은 소속 각급 기관과 부서의 홍보 게시판 등에 노동조합의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과 부서는 노동조합 홍보물 게시·첨부·배포를 방해하거나 게시물을 임의로 훼손하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홍보나 공지를 위하여 통신망(K에듀파인 내부메일, 메신저,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근무시간 내 노동조합이 청사 및 소속 직원의 모든 근무현장 순회, 간담회(면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교육감은 경북교육 업무용 메신저의 조직도에 노동조합을 추가하여 조직도를 개선·운용한다.

⑥ 교육감은 경북교육 업무용 메신저에 노동조합 아이디를 부여하여 노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한다.

⑦ 교육감은 경북교육 업무용 메신저의 노동조합 아이디로 교육감 외부에 전자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이를 임의로 차단해선 안된다.

⑧ 교육감은 교육청 및 소속 기관 홈페이지 및 업무관리시스템 상에 노동조합 홈페이지 링크를 생성하고 유지한다.

⑨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각급 기관 내에서의 홍보용 현수막 게첨 및 게시물 게시, 첨부, 배포 등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홍보 활동을 보장한다.

⑩ 교육감은 각급 기관 내에 노동조합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 공간을 마련하도록 지도한다.

⑪ 교육감은 교육청이 주관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 노동조합 홍보 시간을 보장한다.

⑫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중에 업무용 메신저, 내부메일 등을 활용하여 조합의 홍보나 공지사항 등을 조합원에게 홍보하는 것을 보장한다.

⑬ 교육감은 교육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조합의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한다.

⑭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공보담당 부서를 통해 언론보도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12조 【노동조합 활동 중 사고】**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전임 또는 비전임 조합원

의 교섭활동과 노사협의회,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과정에서 질병·사고 등 재해를 당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제13조 【조합원 교육활동의 보장】** ① 교육감은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동 전문교육기관에서 노동조합 임원과 노사담당 공무원에게는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조합원에게는 기본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신규공무원 연수 및 각종연수 등 20시간을 초과하는 연수과정에 노동 관련과목 연수를 1시간 이상 노동조합에 배정한다.

③ 교육감과 소속기관은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행사, 연수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노동조합에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조합원 교육을 월별 2시간 이상 유급으로 보장하며 이를 상시학습으로 인정한다.

⑤ 교육감은 노동 관련과목을 개설·운영할 경우, 노동조합이 참여하도록 하고, 강사와 강의내용은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⑥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관련한 각종 연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다.

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시 공무원노동관계 관련 과목의 교육 과정 중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강사가 배정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⑧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동·하계휴가 중 각 2시간의 지방공무원 노사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한다.

⑨ 교육감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근무시간 중 월 2시간 이내의 조합원 연수 시간을 노동조합에 보장한다.

**제14조 【조합비 일괄공제】**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보수규정 제19조의2 제①항의5 호에 따라 원천징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지급한다.

### **제15조 【편의 제공 및 행사 지원】**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물 이용 요청 시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록 협조한다.

-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전용사무실을 제공한다. 사무실은 본청 청사 내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청 인근 지역의 전·월세 형태로 임대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사무기기 등 비품과 운영비를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지원한다.
- ⑤ 교육감은 교육감 소관 각종 교육연구시설을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공공목적 수행 등으로 사용 요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⑥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공의 행사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도 교육청 소유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⑦ 교육감은 사무용 및 그래픽용 각종 소프트웨어 계약 시 노동조합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⑧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경북 교육가족을 대상으로 교육발전에 관련된 설문조사에 유레카 설문조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문서 및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지한다.

1. 각종 조례·교육규칙·규정의 공포 및 훈령의 발령 사항
2.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사항
3. 각종 교육통계연보, 교육수첩, 교육행정자료 등의 간행물
4. 각급 기관에 시행한 노동조합 관련 공문
5. 단체협약 이행 관련 공문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문서 또는 전달 가능한 형태로 통지한다.

1.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입법예고 사항
2.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인사, 정책, 조직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업무포털 및 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노동조합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문서를 제공한다.

1. 각급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보내는 교원단체와 관련된 공문서 및 단체교섭 체결협약서 및 해설서(타 노동조합)

2. 교육감 및 각급 기관 조직기구표
  3. 교육청이 책자로 발간한 각종 교육계획 또는 업무편람(매뉴얼 포함)
  4. 지방공무원 정원 및 현원에 관한 사항(총액인건비 포함)
  5. 교육청 및 각급 기관의 예산편성지침, 예·결산서, 사업설명서
  6. 주요 업무계획, 단체협약 해설서(타 노동조합)
  7. 의회 보고자료(주요 업무,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8. 기타 노사가 합의한 사항
- ④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발송한 공문을 소속기관 및 학교에서 성실하게 정식절차에 의거 접수·공람하도록 지도한다.

**제17조【도의회 서류제출】** 교육감은 조합원의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도의회의 자료요구 시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18조【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교육감은 교육청이 주최하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각종 협의회, 공청회, TF, 정책연구 등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제19조【노사협의회】**
-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무조건 유지 및 개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협의 안건은 개최 10일 전에 통보한다.
  - ③ 노사협의회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표자를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원 수는 양측 협의에 따라 정하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④ 협의내용은 기록으로 남기고 노사 대표는 합의서에 서명한다.
  - ⑤ 교육감은 합의서 내용을 각급 기관(학교)에 공문으로 시행하고, 각급 기관(학교)장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지도 한다.
  - ⑥ 교육감은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의 이행상황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 ⑦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동조합 시·군지부(회)와 연간 1회 이상 지역 노사협의회를 운영한다.
    1.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단체협약에서 위임한 사항
    2. 교육장 소관 지방공무원 현안 사항
    3. 기타 교육장의 소관 사항

**제20조【대표자 협의 정례화】** 노동조합과 교육감의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 대표자와 교육감의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반기별로 1회 실시한다.

### 제3장 인사 및 조직

- 제21조【인사의 원칙】** ①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조합원의 전보, 승진 등 인사 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 ② 교육감은 인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 일정이 확정되면 인사개요 등을 노동조합에 통지한다.
- ③ 교육감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④ 교육감은 5년마다 인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거쳐 보직관리규정을 정비한다.
- ⑤ 교육감은 투명하고 공정한 전보인사 정착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전보점수제가 적용되는 교육지원청별 보직관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한다.
- ⑥ 교육감은 정기 인사 발령일 1개월 전에 승진·전보 임용 기준, 규모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인사운영계획을 예고한다.
- ⑦ 교육감은 정기 인사 발표를 발령일 20일 전에 한다.
- ⑧ 교육감은 장애인 지방공무원이 인사 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감은 가정친화적 제도 운영 확대를 위해 출산휴가, 육아시간, 모성보호휴가 등 관련 특별휴가가 활성화되도록 안내하고, 대체인력 지원 또는 임신 지방공무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⑩ 교육감은 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른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전보 또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통해 결원을 보충한다.
- ⑪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공약)
- ⑫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신규 임용 시 생활근거지 및 근무희망지를 고려하여 발령하고 각급 기관(학교)의 조기적응 및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 가급적 행정직원 2인 이상인 학교 또는 기관에 배치한다.

**제22조【성과상여금 지급 개선】** ① 교육감은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련 규정에 따른 ‘성과급심사위원회’에 2명 이내의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성과상여금이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교육감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30%이상 참여하게 한다.

**제24조【대체인력의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결원을 보충하되,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동일 직렬 결원이 2년을 초과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교육행정직공무원이 결원 발생 시 교육지원청 직원이 겸임하도록 한다.

**제25조【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① 교육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근무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인사 발령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별로 승진 분포비율을 공개한다.

③ 교육감은 기피·격무부서 근무자 등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상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6조【조직·인력의 적정 배분】** ①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의 조직 진단시 조직 및 인력의 적정배분을 위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 교육감은 현행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배정 방식에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별, 직능별로 배정하는 등 학교 현장 중심에 맞게 개선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진단 결과와 당시 인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조직·인력을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정원의 5%를 추가 확보한다.

⑤ 교육감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군 지역 교육지원청에도 전산직렬 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복수직렬 정원을 책정함에 있어서 업무성질, 나이도, 책임 정도,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 소수직렬 인력 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제27조【행정실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행정실 설치 근거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② 학교 행정실과 교무실이 통합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제28조【행정직원 차별 금지】** ① 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무원을 무시 또는 교원과 차별하는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인권침해 방지 교육(매년 1회 이상)
2. 성희롱 예방교육

**제29조【교육훈련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연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교육기관 위탁 및 실기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반영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③ 교육감은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청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일부를 찾아가는 연수로 시행한다.

④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상시학습 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시설안전점검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운전, 조리직렬 등 근무 특성을 감안하여 집합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방학기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⑦ 교육감은 시설관리직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과목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⑧ 교육감은 효율적인 산업안전보건연수를 위하여 원격·집합 등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⑨ 교육감은 시설관리, 조리, 운전 직렬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관련 연수

등을 교과목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 ⑩ 교육감은 신규 공무원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⑪ 교육감은 조합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매년 1인당 자기개발비 3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 ⑫ 교육감은 내실 있는 온라인 연수를 위하여 채택 온라인 연수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제30조 【공로연수】** ① 교육감은 직급별 공로연수비 지원기준 격차를 완화하도록 개선한다.

- ② 교육감은 희망자에 한하여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②항의 공로연수 대상 현원에 후임자를 가용인원 범위내에서 배치한다.

**제31조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연구회 및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연구회나 동아리 지원 규모나 방식을 교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한다.
-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6급 승진 시 2주 이상의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 ④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원으로 배치해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 활동 및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⑤ 교육감은 본청에 교육행정연구모임 담당부서를 지정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행정 연구모임을 지원한다.
- ⑥ 교육감은 학교 행정실장의 교육행정 정책워크숍을 연1회 개최하고 교육지원청 별로 직급 또는 권역별 행정실장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제32조 【지방공무원의 표창 기회 확대 등】** ① 교육감은 모범공무원, 경북교육발전 유공 등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지역, 기관, 직렬 간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교육감은 ①항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③ 교육감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포상을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의 참여를 보장한다.

④ 교육감은 현행 교원중심의 포상 기회를 개선하고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포상 기회를 확대한다.

**제33조【국외연수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외 연수를 예산 등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확대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국외연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직종, 직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정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 국제경쟁력의 향상,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행정 연구모임, 학습동아리의 주제별 해외 배낭연수 등 견학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

#### 제4장 노동조건 개선

**제34조【유연근무제】** ① 교육감은 원거리 출·퇴근자의 편의도모 및 자기계발을 위해 유연근무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35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관과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이 동일하게 학습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

**제36조【휴일근무 및 행사지원 근무 시 조치】**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비상소집 등 비상 근무를 하게 할 경우 일정시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근무시간 준수】** ① 교육감은 조합원이 근무시간 외에는 조합원의 자기 계발 등 개인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시간외 근무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급 기관장

(학교장)을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근무시간 외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파견하거나 근무하게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정상 근무일이 아닌 날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보장한다.

**제38조【지방공무원 동원 금지 등】**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이 주최·주관·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조합원을 할당식으로 동원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에 대한 성금 등의 금품 강제 모금 행위를 금지한다.

③ 교육감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시 행정실 지방공무원 동행을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제39조【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계약직 비중을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채용된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에 시설관리 직렬 정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시설관리·운전·조리직렬의 공무원 6급 정원대비 승진비율을 전국 평균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관리직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①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학교)별 실정을 고려하여 도급 및 용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의 예산 요구 및 지출 품의 권한을 보장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 학교 시설 관리 전문 과정 교육을 개설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한 학교시설관리를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학교시설 관리 개선방안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④ 교육감은 소속 기관(학교) 시설의 사용자 편의 증진, 시설 자산 가치 보존, 운영 효율성 극대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시설관리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범교육지원청 및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운영한다.

⑤ 교육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일지의 강제 작성 지시등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제41조【조리직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배치기

준 결정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 ② 교육감은 조리직공무원(이하 ‘조리사’라 한다)의 직무연수 및 정보화 연수 기회 확대 실시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급식 관련 협의 시 노동조합에서 추천받은 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각급 기관 조리업무 관계자의 직업병과 관련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 ⑤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리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 기본방향의 조리사 직무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⑥ 교육감은 1일 3식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⑦ 교육감은 조리직렬 지방공무원의 휴게실과 샤워실(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신설 및 현대화사업 시 반영하고, 기설학교의 경우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도록 지도한다.
- ⑧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식단 작성 시 조리 공정과정에 대한 부분을 조리사와 협의하도록 한다.
- ⑨ 교육감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 2023년 중단된 조리직렬 공무원 신규 채용을 재개한다.
- ⑩ 교육감은 공무원조리사라는 이유로 전보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⑪ 교육감은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조리사와 공무직 조리사의 인사 시기를 동일하게 하도록 노력한다.
- ⑫ 교육감은 합리적인 정원조정으로 신설학교에 조리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⑬ 교육감은 방학 및 휴업 중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 ⑭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운영을 위하여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실무자(조리사)의 의견을 확인하여 적극 반영한다.

- 제42조 【운전직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운전원의 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휴일 공용차량 사용을 제한하도록 지도한다.
  - ② 교육감은 운전직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 ③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운전자보험, 자차보험포함)으로 가입하여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운전직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수리

비 등 피해배상을 운전직공무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 ⑤ 교육감은 운전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적정한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운전직의 일시적인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로 실질적인 대체인력풀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 ⑦ 교육감은 어린이통학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자 탑승 대상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준수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한다.
- ⑧ 교육감은 기관 설정을 고려하여 방학 중 등 1주일간 차량 점검 기간을 확보한다.
- ⑨ 교육감은 각급 학교 통학차량의 공동운행을 시행할 경우 운전원과 협의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⑩ 교육감은 학구 밖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거나 통학차량을 재배치할 경우 운전직공무원 근무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⑪ 교육감은 운전원이 급식차량을 운행할 경우 운행 종료 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 ⑫ 교육감은 통학차량 구입시 안전과 관련된 차량선택사양(옵션)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동승보호자(보호탑승자, 인솔교사)가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한다.

**제43조【사서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① 교육감은 사서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한다.

- ② 교육감은 사서의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사서직 공무원 정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한다.
- ③ 교육감은 도서관 근무 공무원의 주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연중 지원 인력을 배치한다.

**제44조【피복 지급】** 교육감은 다음의 특수 업무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 후 피복비 예산편성지침에 명시한다.

1. 공사감독: 업무복
2. 시설관리: 업무복
3. 조리: 업무복
4. 운전: 업무복
5. 기타직렬: 업무복

**제45조【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교육감은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 수립시 노동조

합과 협의한다.

**제46조 【업무추진비의 운영개선】** 각급 학교의 일반업무추진비 계상한도액 내에서 행정실 등의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7조 【당직근무 외】** 교육감은 공무원이 출근 전·퇴근 후 근무시간 외 학교 출입문 개폐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8조 【늘봄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늘봄학교 실무원을 활용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증가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도교육청 늘봄학교 운영 계획 수립시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49조 【특정업무담당 활동비 등 지급】**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에서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 특정업무경비(특정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1. 학교폭력
2. 학교체육
3. 평생학습(도서관)
4. 기타 노동조합과 협의한 특정업무

② 교육감은 학교 소속 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할 경우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2. 안전관리자(전기, 가스, 승강기, 소방 등)
3. 기타 노동조합과 협의한 특정업무

**제50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현실화】**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를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여비를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제51조 【모·부성 권리 보장】** ① 교육감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승진, 전보, 평정, 경력, 유급휴가 등 불이

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임신 중인 조합원이 정시에 퇴근하도록 배려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비상근무, 숙직근무 등에서 제외한다.
- ③ 교육감은 미취학아동 및 영유아를 양육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숙직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한다.
- ④ 교육감은 임신 16주 이하의 여성공무원이 유산의 위험이 줄어드는 시기까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52조(보육시설 및 육아시간)** ① 교육감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직장보육시설 설 방안을 마련한다.

- ② 교육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 자녀의 위탁보육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 ③ 영유아를 가진 직원들은 어느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요일제 차량 제한 운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여성휴게실 내에 별도의 수유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3조(일.가정양립지원)** ① 교육감은 임신 중이거나 생후 36개월 미만의 유아를 가진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 본인의사를 고려하여 업무 부담이 경미한 부서(근무지)로 배치 전환해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여성 조합원이 매월 보건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여성 화장실에 비상용 여성용품, 선반, 비데 등을 비치 및 설치한다.
- ③ 교육감은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을 확보한다.
- ④ 교육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공무원이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5일 이상 업무복귀 직무 연수를 시행한다.
- ⑤ 교육감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전보 및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 ⑥ 교육감은 남성공무원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한다.

**제54조(직장 내 성폭행 방지 및 성폭력금지)** ① 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성폭행이나 성폭력이 동일 청사 근무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 발생 즉

시 가해자를 전보인사 조치하고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피해당사자의 요청 시 의사 진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교육감은 성폭행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다.

**제55조(성평등)** ① 교육감은 민원부서 등 특정 부서에 특정 성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종 행사에 특정 복장 착용을 강요하거나 근무 중 차 접대, 민원 안내대 배치 등 성별에 따른 업무 명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직원의 복지, 인사, 보수, 수당 등 노동조건 전반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56조【휴직에 따른 불이익 해소】** 교육감은 공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일 경우 그 사유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57조【지방공무원의 업무 경감】** ① 교육감은 행정실의 행정직원이 행정의 전문성 향상 및 행정가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한다.

1.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 교수학습 활동에 관련된 업무
2. 교원인사, 교원상훈, 교원복무, 교원인사기록카드 정리, 교원호봉획정, 강사계약 (수업결원대체강사, 전일제강사, 방과후강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강사) 등
3. 학교안전공제회, 공무원행동강령, 중식지원 대상자 선정 업무
4. 교무실에서 처리해야 할 공문서 및 교원이 처리 할 업무
5. 학생 전출입(입.퇴학) 교무학사 업무
6.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행사 시 다음과 준비 전담
7. CCTV 운영 업무

② 교육감은 방학기간 중, 교원이 처리하여야 할 업무는 교원이 처리하도록 지도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 학교 업무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교무영역, 행정영역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보고절차 등을 간소화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공문에 대해서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보고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⑤ 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과 관련하여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재난대응 훈련 등을 실시함에 있어 학생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교원이 담당토록 한다.

⑦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를 점검하도록 한다.

⑧ 교육감은 「학교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명시된 보건 업무와 관련하여 학교 직원 간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⑨ 교육감은 학교장이 업무의 성질과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직원간에 적정하게 업무가 분장되도록 노력한다.

⑩ 교육감은 5년에 1회이상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학교업무분장 표준안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58조【지방보조금 정산 업무 개선】** 교육감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 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정산 시 지방재정관련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불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한다.

**제59조(학교 업무 경감 추진)**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 추진 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조회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조직 진단 및 직무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인력과 업무 조정을 통하여 학교 업무 경감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신설학교, 폐교학교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⑤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교직원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웹 기반의 학교업무매뉴얼을 관리하고 최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⑥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전결권자가 책무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지도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각급 학교 위임 전결 사항의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여 결재선을 축소하도록 권장한다.

- 제60조(단위학교 행정지원 강화)**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학교지원센터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② 교육감은 5천만원 이상의 시설사업은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및 인사기록을 단계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보험 및 퇴직금 관리는 즉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도록 한다.
- ④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 신규 임용자 연수 시 1시간 이상의 학교 현장 이해 과정을 편성하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내부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⑤ 교육감은 각종 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의회 등 외부교육감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 학교에 대한 이첩을 최소화한다.
- ⑥ 교육감은 나이스, k-에듀파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학교에 요구하지 않는다.
- ⑦ 교육감은 각급 시범(연구)학교 신청 시 교직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한다.
- ⑧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 또는 선생님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기관에 1명 배치된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업무분석을 통하여 필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⑨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담당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⑩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한다.

**제61조【시설물의 안전점검】**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전문기관의 위탁 등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5장 후생복지

**제62조(복지예산 편성)**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 ② 교육감은 조합원의 건전한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복지포인트 예산의 증액 편성에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맞춤형복지 기본 포인트가 상향 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63조(조례 제·개정)**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의 확대 및 개선요구 등 다양한 복지요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후생 복지조례를 제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시·도 평균에 미달하는 장기재직휴가 및 학습휴가 등의 일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제64조【휴양시설 마련 및 문화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연수 및 휴양 복지시설을 확대한다.

②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문화행사 및 문화공간의 입장 시 지방공무원이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65조【언론보도】** ① 교육감은 왜곡된 언론보도에 의하여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피해 조합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② 교육감은 기자실을 정책 브리핑과 직원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개방·운영하도록 한다.

③ 교육감은 언론사 등으로부터 자료제공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담당을 통하여 제공되도록 한다.

**제66조【상시출장 근무자 차량지원】** 교육감은 상시출장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업무용 차량 지원을 확대한다.

**제67조【행정실 면적 확보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행정실의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독립된 장소에 1실( $66m^2$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행정실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사무용 책상 등 집기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제공하여 행정사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행정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1인 1PC를 제공하고, 교체 필요한 PC의 구입예산을 확보 한다.

④ 신설학교 개설 시 숙직실 내부에 화장실·샤워실을 설치하고 창고는  $90m^2$  이

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⑤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질 개선을 위한 환기 또는 공기정화시설이 설치되도록 한다.
- ⑥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서 직원의 좌석 배치 시 직렬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⑦ 교육감은 신설학교의 행정실 배치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68조【각급 기관의 복지시설 확충】**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냉·난방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도록 지도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설 및 전면개축 학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9조【스마트워크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조합원이 필요시 본래의 사무실 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원이 필요시 본래의 사무실 외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절차를 안내한다.  
④ 교육감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업무수행이 용이하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70조【교육행정기관 식당 운영】**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의 근무인원이 50명 미만일 경우 직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71조【학교 시설 개선】** 교육감은 학교 간의 시설격차 완화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한다.

**제72조【수의사업 지원】**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복지 확대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수의사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73조【체력단련시설 설치】** 교육감은 조합원의 체력 증진과 이를 통한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체력단련시설을 각급 기관에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제74조【재난 발생 시 지방공무원 보호】** ① 교육감은 조합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조합원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닌 때에는 소송비용 등에 대해 행정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한 소송 발생 시, 조합원 각급 기관이 교육청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교육감은 조합원이 각급 기관(학교) 재난으로 교육청의 각종 조사를 받을 때 노동조합이 조사 장소에 참관할 수 있다.

**제75조【지방공무원의 인권 및 건강 보호】** ①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인권침해로 교육청에 청원을 할 경우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 후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② 교육감은 사실관계 확인 결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로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6조(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혜택 개선)** ① 교육감은 현행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복지혜택에 있어 교원과 다르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한다.

② 교육감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운영에 참여하는 교직원 대표를 선발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6급 이하 지방공무원 3인 이상의 참여를 보장한다.

**제77조(장제용품 지원 등)** 교육감은 조합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장제 시 장제용품 등을 지원한다.

**제78조 (교육감의 의무)**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제일의 원칙이 어떤 원칙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서 교육감의 의무를 관리감독자에게 떠넘기지 않는다.

③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소속 직원의 재해예방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제79조【건강관리】**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일반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특별건강검

진 기준 마련 등 모든 공무원의 일상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 ② 교육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 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의 확진 검사를 공가 또는 특별휴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마음 건강관리를 위해 ‘교직원치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④ 교육감은 종합건강검진항목을 조합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항목 등을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노동 조합과 협의하여 지정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 ⑤ 교육감은 조합원이 4대 암의 검진 등 정밀검진을 받을 시 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⑥ 교육감은 직장 내에 혈압측정기 등 기본 건강 체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하도록 노력한다.

**제80조 (위험성 평가 및 재해조사)**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공무원의 업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학교 및 기관 순회 점검 방식의 위험성 평가를 교육지원청별로 연간 1회 이상 시행한다.

- ② 교육감은 ①항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제81조 (악성 민원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① 교육감은 인사부서를 악성민원 대응 총괄 업무 부서로 지정한다.

- ② 교육감은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세부 기준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한다.
- ③ 교육감은 악성 민원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고충 상담원을 남·여 1명을 전담 배치한다.
- ④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사건 인지 후 지체없이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 등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련 부서장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 ⑤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고충 상담원을 남·여 1명을 전담 배치한다. 단, 제6조 6항의 신고센터와 겹쳐 운영할 수 있다.
- ⑥ 교육감은 악성 민원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82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

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전체에 대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근거해 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지도한다.
- ③ 교육감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지방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제83조【관리감독자】** 교육감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교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두고,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 제84조(가스안전관리)**
- ① 교육감은 가스 안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간 1회 소속 기관(학교)의 월 사용 예정량을 전수조사하고 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관(학교)을 파악한다.
  - ② 교육감은 가스 안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월 사용 예정량이 4천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기관(학교)은 업무를 용역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교육감은 가스 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에 소속 기관(학교)의 가스안전관리 업무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 ④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시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 예산을 편성한다

## 제6장 공직사회 개혁 및 교육부 등 관계기관 전의

**제85조【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에 개정 요구하도록 건의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2항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를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 사회 인사로 구성한다.'로 개정을 건의한다.
2. 행정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 개정을 건의한다.

**제86조【연금제도 개정】** 교육감은 공무원연금법이 부당하게 개정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제87조【공무원보수·수당 규정 개정】**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승진 시 호봉  
삭감 폐지를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 중 근가호봉이 신설되도록 건의한다.

③ 교육감은 시간외근무수당 중 정액분을 기본급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한다.

④ 교육감은 총액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 교육감은 지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 단가를 평준화 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  
의에 노력한다.

⑥ 교육감은 성과상여금이 지방공무원 보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  
의하도록 노력한다.

⑦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출장 시 계급별 등급에 의하여 지급하는 현행 여비규정  
을 폐지하고 평등하게 지급되도록 여비 규정 개정을 건의하도록 노력한다.

**제88조【관리수당】** 교육감은 유.초.중.고 행정실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관  
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건의한다.

**제89조【특수업무수당 병급】** 교육감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기술정  
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이 병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

**제90조【가족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부양가족 전원의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부양  
가족 1인당 월50,000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에 노력한다.

**제91조【장애인보조수당 신설】** 교육감은 공무원 본인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  
는 경우, 장애인 1인당 월50,000원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에  
노력한다.

**제92조【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교육감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대학생 자녀  
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건의에 노력한다.

**제93조【각급 학교 행정실장 직책수당 지급】**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행정실장에

게 직책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한다.

**제94조 【특수업무수당 인상】** 교육감은 특수업무수당이 인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한다.

**제95조 【업무대행수당】**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지방공무원의 업무대행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한다.

**제96조 【운전직공무원 대체인건비 수당 현실화】** 교육감은 운전직공무원의 대체인건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

**제97조 【위험수당】** 교육감은 방역, 전기,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 가스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관리 직렬공무원들에게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 개정을 건의한다.

**제98조 【민원업무수당】** 교육감은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기관 및 범위의 조정과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민원업무수당 지급을 위해 노력한다.

**제99조 【특수지근무수당】** ① 교육감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차기 특수지 정기실태조사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을 규정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사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특수직무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100조 【기술업무수당 현실화】** ① 교육감은 시설.공업.시설관리 공무원이 설계.감독.감리 등의 전문 업무와 공사감독 등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당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② 교육감은 늘봄학교 운영 업무(수납, 지출, 인쇄, 급식, 시설관리, 운전 등) 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감협의회에 건의한다.

**제101조 【진료확인서 대체】** 교육감은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간 누적일수 기준 6일을 초과한 경우 현행 ‘진단서’ 첨부를 질

병 증상을 증명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한다.

- 제102조【감사 개선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가급적 학교 감사를 학년 초에 실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② 교육감은 각종 감사 시 감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며, 감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에 대한 감사 시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교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극 행정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면책제도를 적용한다.
- ④ 각종 행정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량화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며, 또한 나이스 및 에듀파인시스템 DB를 활용한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도의회 및 감사원 등의 자료제출 및 수시감사 자료 요구 시 각급 기관 자료취합을 최소화한다.
- ⑤ 교육감은 노동조합이 청구하는 감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 ⑥ 교육감은 상급자의 불법·부당 행위로 인해 하급자가 부당하게 동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 제103조【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①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 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이 학사에 관한 업무가 주된 것이므로 본청 업무 담당부서를 교육국에서 담당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③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시 원활한 회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속기사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외의 사항을 교육청 사업부서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추가하지 않도록 한다.

- 제104조【행정업무규정 등 연수】** ① 교육감은 교장, 교감, 교사 자격 연수 시 교육행정 관련업무(문서 및 사무관리 등) 과목을 1시간 이상 개설하여 교육한다.

② 교육감은 신규임용,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자격연수 등 교원연수과정에 학교 회계 및 에듀파인 시스템 교육을 의무적으로 편성한다.

**제105조(내부고발자 보호)** ① 교육감은 부당한 행위 강요자 및 부패공무원을 신고한 직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된다.

②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경우 감사 및 조사과정을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③ 교육감은 내부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고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부정부패가 척결되도록 한다.

④ 교육감은 민원제기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노출한 공무원은 징계 한다.

**제106조(업무갈등 해소)** ① 교육감은 업무분장이 명확한 공문을 소속 기관(학교)에 발송해 구성원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 지방공무원의 업무 분장에 대하여 행정실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③ 교육감은 소속 기관(학교)의 업무갈등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제107조(노동기본권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신장과 민주적 노사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국제노동기준(ILO협약)에 부합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노동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기 전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동일하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 시까지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

**제2조【보충 협약 및 재교섭】**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경제적·사회적 변화 또는 법률의 개정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협약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 체결 및 재교섭을 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본 협약과 동일하다.

**제3조【공동 해결집 작성】**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 해결집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급 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제4조【관계법령의 준용】**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노사관계 법령 및 노동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이행방법 등】** ①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협약체결 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② 교육감은 노동조합에서 미 이행 학교에 대한 이행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행정지도하고 그 결과를 노동조합 측에 통보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한다.  
③ 교육감은 협약의 내용 중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후생복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예산은 관계법령 및 예산 편성지침 등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교육감과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이행점검반을 구성하여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호 합의하여 시행한다.  
⑤ 교육감은 단체협약 이행실태를 연2회 성실히 점검하여 그 결과를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6조【협약의 보관】** 본 단체협약은 이를 증거 하기 위해 5부를 작성하여 교육감과 노동조합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한다